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110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3. 8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4. 3. 22. 접수 제1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: 별지2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공병훈

별지